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표창)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<u>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특유의 무예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공적이 탁월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전통무예의 보전 및 전승 기여</u> 2. <u>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</u> 3. <u>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</u> 4. <u>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수 성적 획득</u> 5. <u>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</u> 	<p>제3조(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표창) 시장은 <u>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</u>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<삭제></p>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전통무예지도자”란 학교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1.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
2. 전통무예 관련 선수,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
3.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
4.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·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
5.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
6.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

7. 전통무예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8.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전통무예지도자”란 학교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·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(典型)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·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전통무예 홍보·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</u></p> <p>2. <u>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</u></p> <p>3. <u>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</u></p> <p>4. <u>국내·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</u></p> <p>5. <u>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	<p>제4조(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.</p> <p>1. <u>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</u></p> <p>2. <u>전통무예 관련 선수,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</u></p> <p>3. <u>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</u></p> <p>4. <u>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·문화콘텐츠 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</u></p> <p>5. <u>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</u></p> <p>6. <u>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7. 전통무예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

8.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삭 제>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4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